

의안번호	2215557
의 퇴 인	손솔 의원
회 답 일	2026. 2. 12.
추계번호	25C7461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9조(돌봄시간 단축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의 돌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적 돌봄을 확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제10조(보편적 돌봄 분담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 간에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하게 돌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며 돌봄 분담을 촉진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제12조(돌봄이 필요한 돌봄자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 자신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돌봄 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제13조(돌봄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부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돌봄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의료서비스 등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제14조(대체 돌봄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된 돌봄자의 휴식을 위하여 주간, 저녁 및 야간보호, 휴일, 주간 및 월간보호, 식사, 청소 등 가사지원, 외출 및 진료 동행을 포함하여 시간대·요일·기간·행위별로 세분화된 대체 돌봄을 제공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된 돌봄자가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체 돌봄을 제공하여야 함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체 돌봄이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제15조(사회보험 보장)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된 돌봄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을 보장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된 돌봄자의 돌봄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제1항) 의무규정 (제2항) 재량규정
7	제16조(돌봄자의 자조모임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 자조모임의 조직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제17조(돌봄 정보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에 대하여 돌봄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제18조(훈련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가 직업활동을 병행하거나 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제20조(아동의 돌봄 부담 면제)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등을 돌보는 아동이 더 이상 돌봄 부담을 지지 않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가족등과 아동에게 각각 충분한 공적 돌봄을 제공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아동이 돌봄 부담으로 인하여 겪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약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제21조(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청소년·청년의 학업·교육훈련·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청소년·청년을 진학 및 취업 등에 있어 지원 및 우대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원 및 우대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4항) 「조·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돌봄 부담을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 여부 및 노동조건 결정에 있어서 돌봄 청소년·청년이 돌봄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12	제22조(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돌봄휴직등 보장) 제1항	모든 일하는 사람은 자신 또는 가족등의 임신·출산, 자녀 등 양육, 가족등의 질병·사고·노령·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휴직·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제23조(돌봄휴직등의 동등한 사용 보장)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와 동등하게 돌봄휴직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2. 고용계약 외 다른 계약의 형식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4.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서 사용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5. 직업교육훈련·연수·수습·현장실습수업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제24조(돌봄휴업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가족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업하거나 영업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감면하거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제25조(돌봄휴직급여)	국가는 돌봄휴직자들에게 돌봄휴직등 또는 돌봄휴업등의 기간에 대하여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을 지급함	의무규정
16	제29조(근속 인정과 평가)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로 하여금 돌봄휴직자가 돌봄휴직등으로 습득한 기술과 경험 등을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수립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17	제30조(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휴직자의 사업주에게 고용 또는 계약을 유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휴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17	제9조(돌봄시간 단축 촉진)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가족 및 기타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 대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하 “돌봄자”)에 대하여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권리를 보장하며, 평등한 돌봄 분담을 촉진하고 돌봄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을 위해 휴식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공무원 등은 가족돌봄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확대될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9조~제12조·제14조) 제정안에 따라 지역별 공적 돌봄 시설 확충(안 제9조), 장시간 근로 단축 기업 지원 및 돌봄 분담 교육 실시(안 제10조), 취약 돌봄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안 제12조), 대체 돌봄 지원(안 제14조)을 위하여 기존 사업의 확대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설 건립비, 인건비 및 돌봄 서비스 이용비 지원금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추가로 확충할 시설 수와 확대될 대상자 범위 및 인원, 지원 단가 등을 알 수 없음
 -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시설에 대하여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아이 돌봄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방과 활동 서비스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안 제16조~제18조) 제정안에 따라 돌봄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안 제13조), 국민연금·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보장 및 가입 기간 추가 산입(안 제15조), 자조모임 운영 지원(안 제16조), 돌봄 정보 제공(안 제17조) 및 직업훈련 지원(안 제18조) 등을 실시할 경우 서비스 이용료, 보험료 지원금, 훈련비 등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대상자 규모와 지원 단가(인당 보험료 지원액, 상담·훈련 단가 등)를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어려움
 -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을 통해 보호자에 대한 일시적 휴식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음(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2,544억 7,200만원 편성)
 - 또한,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에게 정보 및 교육지원,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54억 400만원 편성),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산관리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11억 2,200만원 편성)

- (안 제20조·제21조) 제정안에 따라 가족돌봄아동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한 수준의 공적 돌봄을 제공(안 제20조)하고, 돌봄 청소년·청년의 학업·취업 지원 및 전용 평가체계를 구축(안 제21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서비스 제공 비용 및 행정비용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동의 돌봄 부담 면제를 위한 ‘충분한’ 지원의 범위와 수준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항목별 소요 비용을 산출하기 곤란함
 - － 현재 보건복지부는 4개 지역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하여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조모임 운영·관리 지원, 자기돌봄비 지원 등을 실시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30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국고보조율 70%)
 - (안 제22조~제25조·제29조·제30조) 제정안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 돌봄휴직을 보장하고(안 제22조·제23조), 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돌봄 휴직급여 지급하며(안 제25조), 자영업자의 휴업 및 사업주의 고용 유지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안 제24조·제30조), 사업주의 평가체계 수립 지원(안 제29조) 등을 시행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과 세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대상자 수 및 지원금 지급 및 세제 감면 규모 등을 확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